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47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황운하·강경숙·신장식

김준형 • 박은정 • 전용기

김재원 • 백선희 • 서왕진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 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 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제22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	2			
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5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단서 신설>	<u>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u>			
	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등			
	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			
	이 지난 경우로 한다.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